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가합57615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0,000,000원을 190,416,12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9,583,87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6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0,000,000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360,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0,000,000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6. 5. 12. 보증금액 360,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11.까지(두 차례의 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금액 3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10.로 변경됨), ② 2016. 5. 24.경 체결한 신용보증 한도금액 1,0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18. 5. 23.까지인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 2016. 5. 24.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23.까지(두 차례의 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23.로 변경됨), ㉡ 2016. 5. 24.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23.까지(두 차례의 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23.로 변경됨), ㉢ 2017. 3. 29. 보증금액 36,000,000원, 보증기간 2018. 3. 28.(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기한 2019. 3. 28.로 변경됨)까지로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D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D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대위변제일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보증요율에 연 0.5%를 가산한 이율로 계산한 위약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D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의 대출실행 및 C의 연대보증

1)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원금 합계 총 1,76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부분은 합계 1,190,000,000원(이하 ‘신용보증 담보부 대출금’이라 한다)이다.

2) C은 같은 표의 연대보증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D의 각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만기일자	C의 근보증한도액(원)	신용보증서 담보여부
①	100,000,000	2014. 4. 18.	2019. 4. 12.	120,000,000	×
②	6,000,000	2014. 11. 6.	2024. 9. 30.	6,600,000	×
③	100,000,000	2015. 2. 12.	2020. 2. 12.	110,000,000	×
④	14,000,000	2015. 3. 6.	2024. 12. 31.	15,400,000	×
⑤	450,000,000	2016. 5. 13.	2019. 5. 10.	90,000,000	○
⑥	200,000,000	2016. 5. 25.	2019. 5. 23.	33,000,000	○
⑦	500,000,000	2016. 5. 25.	2019. 5. 23.	82,500,000	○
⑧	40,000,000	2017. 4. 3.	2019. 3. 28.	4,400,000	○
⑨	100,000,000	2017. 4. 14.	2021. 4. 14.	110,000,000	×
⑩	250,000,000	2018. 4. 2.	2023. 4. 2.	275,000,000	×
	1,760,000,000			846,900,000	

다. 이 사건 대위변제 및 잔존채무액

1) D는 2019. 3. 5.경 이후부터 E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9. 4. 24. 신용보증 담보부 대출금 전체에 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7. 11. E은행에게 922,397,164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대위변제 이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2019. 10. 21. 기준 D의 E은행에 대한 잔존채무 및 C이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E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존 연대보증채무의 각 원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순번	미회수 원금 잔액	C의 근보증한도액	C의 잔존 보증채무 원금 잔액
①	100,000,000	120,000,000	100,000,000
②	4,830,000	6,600,000	4,830,000
③	18,333,366	110,000,000	18,333,366
④	12,000,000	15,400,000	12,000,000
⑤	76,101,536	90,000,000	76,101,536
⑥	38,061,679	33,000,000	33,000,000
⑦	94,834,631	82,500,000	82,500,000
⑧	7,542,383	4,400,000	4,400,000
⑨	52,083,341	110,000,000	52,083,341
⑩	204,166,674	275,000,000	204,166,674
	607,953,610	846,900,000	587,414,917

라. 피고와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 설정

1) C은 2018. 7.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2018. 7. 30.자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37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C은 2018. 10. 1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2018. 10. 11.자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103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의 가압류등기

원고는 2019. 4. 11.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200908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 912,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배당기일인 2020. 8. 25. 1순위로 E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 G유한회사에 658,732,731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60,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F에게 264,011,34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F의 위 각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H이 2020. 7. 10.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 이 사건 종전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9. 7. 18. D, C,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9178호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18. 10. 11.자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F는 이를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21. 4. 9.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C과 F 사이에 체결된 2018. 10. 11.자 설정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9. 4. 11. 무렵에는 2018. 7. 30.자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C에 대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8.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① C은 2018. 7. 30.자 설정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922,397,164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제외하고서라도 E은행(이후 G유한회사로 채권양도됨)에 대한 근저당부 채무 원금 600,000,000원, D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중 C의 근보증한도액 합계 846,900,000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원금 81,262,826원, F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원금 3,170,712,675원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남양주시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 합계 1,674,734,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1,074,734,000원 + 이 사건 아파트 가액 600,000,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② C은 2012. 9. 1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같은 날 채권최고액 412,800,000원, 근저당권자 E은행,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12. 6. 말소되었고, 2018. 11. 2.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한편, C이 2015.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등기부에 기재한 C의 주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와 같았다. 즉, 금융기관인 원고가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에 대하여 등기부등본만 확인해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적극재산 보유 현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겨지지 않는다.

③ D는 2019. 3. 5.경 이후부터 E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9. 4. 11.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청구금액 912,000,000원)를 마쳤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60,000,000원)와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및 2019. 4. 3.자 I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82,650,875원)까지 마쳐진 상태였다.

④ 즉,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친 2019. 4. 11. 무렵 등기부상으로 확인 가능한 C의

채무액만 해도 3,274,650,875원(= G 유한회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 피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 F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 I의 가압류 청구금액 82,650,875원 + 원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912,0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그 당시 원고로서는 C의 채무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은 물론 2018. 7. 30.자 설정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케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⑤ 가사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칠 무렵에는 원고도 미처 2018. 7. 30.자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9. 7. 11.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한 점, 2019. 7. 18.경에는 C와 F의 2018. 10. 11.자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종전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9. 7. 11.경에는 원고가 C의 채무초과상태는 물론 2018. 7. 30.자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2019. 7. 11.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원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0,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6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2015. 4. 17. 30,000,000원, 2015. 8. 7. 70,000,000원을 각 대여해 주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아왔는데, 2019. 2.경부터는 월 1,000,000원의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6. 7. 29.부터 2017. 6. 30.까지 합계 71,9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으나, 아직까지 위 대여원리금 합계 171,9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실제 채권액은 171,900,000원이므로 이에 맞게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021. 2. 9.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C에게 2015. 4. 17. 30,000,000원, 2015. 8. 7. 70,000,000원을 각 송금해 주었고, C은 2015. 8. 7.자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차용하되 이자는 매월 10일에 지불(이자율 부분은 공란)하며 원금은 2016. 8. 9.까지 변제키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 C에게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M 및 N 등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피고에게 2015. 9. 1.부터 2019. 1. 28.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3,00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C → 피고			
날짜	송금액(원)	날짜	송금액(원)
2015. 9. 1.	3,000,000	2017. 5. 1.	3,000,000
2015. 9. 30.	2,000,000	2017. 5. 31.	3,000,000
2015. 10. 15.	1,000,000	2017. 7. 1.	2,000,000
2015. 11. 4.	2,000,000	2017. 7. 4.	1,000,000
2015. 11. 26.	1,000,000	2017. 8. 1.	3,000,000
2015. 12. 8.	2,000,000	2017. 9. 1.	3,000,000
2015. 12. 31.	3,000,000	2017. 9. 30.	3,000,000
2016. 2. 1.	3,000,000	2017. 11. 3.	3,000,000
2016. 2. 29.	2,000,000	2017. 12. 4.	2,000,000
2016. 3. 2.	1,000,000	2017. 12. 8.	1,000,000
2016. 4. 9.	2,000,000	2017. 12. 30.	3,000,000
2016. 4. 14.	1,000,000	2018. 2. 3.	3,000,000
2016. 5. 9.	3,000,000	2018. 2. 28.	3,000,000
2016. 6. 1.	3,000,000	2018. 4. 2.	3,000,000
2016. 7. 1.	3,000,000	2018. 4. 30.	3,000,000
2016. 8. 2.	3,000,000	2018. 5. 31.	3,000,000
2016. 8. 31.	3,000,000	2018. 7. 7.	3,000,000
2016. 10. 1.	3,000,000	2018. 8. 8.	3,000,000
2016. 10. 31.	3,000,000	2018. 8. 31.	3,000,000
2016. 11. 30.	3,000,000	2018. 10. 4.	3,000,000
2016. 12. 31.	3,000,000	2018. 10. 31.	3,000,000
2017. 1. 26.	3,000,000	2018. 11. 27.	3,000,000
2017. 3. 2.	3,000,000	2018. 12. 31.	3,000,000
2017. 4. 6.	3,000,000	2019. 1. 28.	3,000,000

라) 피고는 C에게 2016. 7. 29.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9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 C			
날짜	송금액	날짜	송금액
2016. 7. 29.	6,300,000	2017. 1. 31.	6,300,000
2016. 8. 31.	6,300,000	2017. 2. 28.	6,300,000
2016. 10. 2.	6,300,000	2017. 3. 31.	6,300,000
2016. 10. 31.	6,300,000	2017. 4. 28.	6,300,000
2016. 11. 30.	6,300,000	2017. 5. 31.	6,300,000
2016. 12. 30.	6,300,000	2017. 6. 30.	2,600,000
합계 71,900,000원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송금한 합계 171,900,000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C이 2019. 2.분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연체한 점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액 171,9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그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모두 담보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 171,9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9. 2. 10.1) 부터 2020. 8. 25.까지 18개월 16일 동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상당액 18,516,129원[= 18,000,000원(1,000,000원 × 18개월) + 516,129원(1,000,000원 × 16/31, 원 미만 버림)]의 합계 190,416,129원이 된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0,000,000원을 190,416,12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9,583,871원(= 360,000,000원 - 190,416,129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원, 판사 김보현, 판사 전경민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남양주시 O 전 996㎡
2. 경기도 남양주시 O건물 P동
[도로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Q]
일반철골구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시설
1층 250㎡
3. 경기도 남양주시 O건물 R동
[도로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Q]
일반철골구조 폴리카보네이트지붕 단층
동·식물 관련시설
1층 250㎡
4. 경기도 남양주시 S 전 988㎡

1)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지급일인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함